

문서번호	BSKS-1-1-32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5

2012.02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26조(재입학)에 의한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입학 대상) 재입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
- 1. 학칙 제30조(자퇴)의 규정에 의한 자퇴자
- 2. 학칙 제31조(제적)의 규정에 의한 제적자
- 제3조(재입학 신청)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별로 대학이 정하는 기간내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재입학 허가자의 재입학 포기로 여석이 생긴 때에는 수업일수 1/4선까지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- 제4조(재입학 허가) ①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과(계열,전공)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한다. 단, 유아교육과, 보건의료행정과는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에 의한다.
 - ②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재입학 시기는 제적당시 이수한 학기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 우선 등록자 순으로 허가한다.
 - ④ 기타 재입학 허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재입학 제한) ① 학칙 60조(처벌) 제1항, 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후 2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- ②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거 산업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7.16.>
- 제6조(재입학 학과)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학과(계열)에 재입학하여야 한다. 단,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학과(계열) 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(계열)로 재입학 할 수 있다.
- **제7조(재입학 절차)** ① 재입학 희망자는 교무처에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② 재입학 담당자는 재입학 여석을 산출하여 재입학 신청자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의 재입학원을 작성(성적증명서 첨부)하게 한다.
 - ③ 학과(계열)장 혹은 지도교수는 재입학 신청자를 면담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수학능



문서번호	BSKS-1-1-32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5

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입학원의 학과장 혹은 지도교수 란에 날인하여 재입학을 동의 한다.

- ④ 재입학 신청자는 학과(계열)장 혹은 지도교수로부터 재입학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(재입학생의 등록) ①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 등록금 을 납입하여야 한다.
 - ②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을 신청한 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제9조(재입학자의 학점인정) ①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조기 재입학자의 조기입학 학기의 성적은 성적포기 규정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.
 - ③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신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2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32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5

[별지 제1호 서식]<개정 2019.07.16.>

	학과장	
경 유		
ᆔ		

결재일	담당	팀원	과장	처장

재 입 학 원

학 번	성 명			생년월일				
전적학과	과/계열	주간 야간	5H =	ł HL	(/ 우년 국	(\ H L
재 입 학 학 과	과/계열	주간 야간	학년	년, 반	()학년	()반

학 점	 	_		년도	וגר								
학 점 취 득 사 항			학년	화기	핵년	화	학년	학기	학년	학기	학년	학기	계
	취득힉	·점											

퇴학·제적처리 사유 및 일자	자퇴, 제적(미등록・미복학), 기타 / (자퇴・제적일자:	년	월	일)
연 락 처	휴대폰 번호(또는 전화번호):() -			

전산입력 일 자		등 록 확 인	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첨부 확인 ⑩
-------------	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위와 같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서류 : 성적증명서 1부

20 년 월 일

본 인:

보호자: 인

인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32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5

《산업체위탁생만 작성》

재 입 학 동 의 서

학 번:

이 름:

사 유:

상기 자는 당사의 재직자로 귀 대학의 위탁생으로 추천·입학하여 과정이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입학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

신 청 자: (인)

산업체 대표: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